

# 環境公示에 관한 國際基準의 강화와 國內企業의 대응방안\*

박 환 일\*\*

## 《目 次》

I. 머리말	III. 國際的인 環境情報 公示基準
II. 環境情報의 公示	IV. 國內企業의 對應方案

## I. 머 리 말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 대기·수질·폐기물 등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헌법 35조 1항)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룩할 수 있으려면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개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이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 문제는 美國이 1960~70년대에 環境規制(environmental regulation)를 강화하면서 政府가 직접 명령하고 통제(command and control)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規制를 강화하면 비용이 치솟게 마련이고,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이 환경법규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일반의 環境意識(public awareness)을 제고함으로써 관련기업들이 환경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유인책을 쓰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정법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일반인의 환경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경영활동을 펴는 기업이 거래업체와 고객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책자세를 취할 것인지는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환경보전에 가장 철저한 美國의 사정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종전에는 公害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공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1969년 環境政策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인 환경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보다 강화된 공해기준에 따른 엄격한 환경규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적발되면 벌금을 낼지 언정 미리 정부기준에 맞는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그 효과는 반감되었다.

\* 이 논문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環境保護對策과 問題點

경제주체별 대책	성 격	문 제 점
政府의 환경규제 · 명령	命令과 統制, 罰則의 적용	- ‘작은 政府’에 역행 -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
企業의 환경법규 준수 공시	시장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	- 上場企業만이 대상 - 환경규제의 사각지대 존재
一般의 환경의식 제고	소비자와 거래기업의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自發的으로 참여	- 시장에서 기업들이 이에 동참(market penetration)하는 데 많은 시간 소요 - 기업의 반응이 소극적이면 별무 효과
各個人의 피해 구제	司法的인 權利救濟	-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 권리구제가 事後的이고 불충분

이에 따라 美國에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금융시장을 통하여, 예컨대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공여할 때 환경규제의 준수를 요건으로 하거나, 은행이 기업의 토지 등 자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대출은행에 대하여 환경오염 복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sup>1)</sup>이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證券市場을 통하여 기업들이 환경규제를 준수하게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market-based economic incentive approach)이 모색되었다. 이것은 미 연방대법원의 세브론 사건<sup>2)</sup>이 그 轉機를 제공하였다.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1) 미국의 환경책임법(일명 “Super Fund 법”,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1980: CERCLA)에 의하면 차주의 경영에 관여하는 대출은행도 책임(lender liability)을 지게 되어 있다. 42 U.S.C. §§9601-9675.

2) *Chevron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467 U.S. 837 (1984): 환경단체인 NRDC는 EPA가 1977년의 대기정화법(CAA)에 의하여 대기중 공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정한 것은 違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법률해석에 있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입법자의 의사를 따르고,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모호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해석이 그 법률의 해석상 과연 허용되는 것인지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입법자(의회)는 공장 시설 전체에 썩워진 버블이 무엇인지 규정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EPA의 해석이 합리적인 정책대안이라고 말했다. 당초 EPA는 공기오염물질 배출원을 공장 전체 및 개개의 시설 이중으로 보았으나,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하더라도 공장 전체적으로는 배출량이 감소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RDC는 입법취지상 개별적인 시설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공기오염을 방지할 것이냐,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냐 하는 정책결정은 법관의 임무가 아니며, 규제의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이어서 의회도 행정부에 위임을 한 것이라 말하고, 이 문제는 행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법원은 행정부의 법률해석에 무리가 없는지만 따지면 된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이러한 버블 이론에 입각하여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의 여유분을 ‘클린 에어권’으로서 다른 공장에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Council, Inc.: NRDC)가 세브론사를 제소한 이 사건의 쟁점은 1977년 大氣淨化法(Clean Air Act: CAA)에 의거하여 대기중 공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한 연방환경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의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EPA의 조치를 지지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일정한 공장시설에 가상의 방울(bubble)을 씌워져 있다고 보고 일부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나머지 시설에서 배출량이 감소되면 전체적으로는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1990년에 개정된 大氣淨化法에 의하여 규정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도 정화시설의 운영자와 거래를 하여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은 기업들이 환경규제를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을 연방기관들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정부기관 요구에 의해 또는 시장의 압력을 받아 環境情報를 공시하고 이에 따른 환경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각종 환경정보를 재무정보에 포함시켜 공시하게 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이 요청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EU식 해법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環境情報의 公示라는 관점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II. 環境情報의 公示

### 1. 環境情報의 의미

정부기관이나 시장에서 기업들이 환경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알아보려면 관련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시장을 통하여 환경규제를 준수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시장참가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보의 非對稱性이 존재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곤란하고 市場의 失敗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어느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시장에서는 공해발생 기업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를 하게 만들어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sustainable natural environment)과 쾌적한 경제성장(comfortable economic progress)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 내용을 완전히 공개한다면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는 더욱 커질 것이다.

기업이나 정부로 하여금 환경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이를 공개토록 하려면 일반 시민에 대하여 '알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알권리를 행사하여 문제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면 공해발생 기업들은 환경보전에 노력하게 될 것이다.<sup>3)</sup> 이러한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미국에서는 「비상계획 및 지역의 알권리에 관한 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을, 유럽에서는

3) Gary Rischitelli, "Developing a Global Right to Know", *ILS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Fall 1995, pp.99-102.

『세베소 지침』(Seveso Directive)<sup>4)</sup>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도 제10 원칙에서 알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많은 경우 환경정보는 기업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여 對外秘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알아야 할 기업의 환경정보는 강제성을 발휘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거나, 기업이 소비자들의 호감(goodwill)을 사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채널은 각종 환경관련 규정<sup>5)</sup>과 관할 행정청의 정보공시정책, 상장법인의 재무정보 공시(financial disclosure)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前者를 통한 정보의 공시는 사건이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일반투자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상장법인의 재무정보에 포함된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고시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정부기관의 정보공개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다만, 공개된 정보는 서로 비교할 수 있고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증권시장에서의 환경정보의 공시란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일반투자자들이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환경정보를 시장에 공시하게 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환경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투자자들이 감시하고 증권투자를 할 때 이를 고려하게 하여 그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활동에 호감을 갖게 마련이므로 당해 기업의 주식 가격은 자연히 오르게 되고, 기업 측에서도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환경규제를 보다 준수하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는 환경투자 펀드(Eco-fund)도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친화성을 주요한 투자기준으로 삼고 있다.<sup>7)</sup> 반면 환경책임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환경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sup>8)</sup>

4) 정식 명칭은 『일정한 산업활동의 주요 사고위험에 관한 지침』(Council Directive on Major Accident Hazards of Certain Industrial Activities 82/501)이며,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비상계획을 통한 손해 배상액의 절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련법에서는 기업들에 環境危害 방지를 위한 각종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일반 시민의 알권리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장하고 있다. *Ibid.*, p.105.

5) 미국의 환경관련 법규가 얼마나 빈틈없이 규정되어 있는지는 다음의 事例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느 공장이 연기를 내뿜는 굴뚝이 있다면 일차로 Clean Air Act(CAA 1988)이 적용되고, 제조공정에서 유독 폐기물이 나온다면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RCRA 1988), 그 폐기물을 야적해 놓을 경우에는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CERCLA 1980),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든다면 Clean Water Act(CWA 1988 & 1993), 그 중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면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EPCRA 1988 & 1993)와 Toxic Substances Control Act(TSCA 1988), 만일 이를 재활용하고자 한다면 Pollution Prevention Act(PPA 1990)가 각각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만일 이들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당해 기업 및 대표자는 각종 행정 및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Bagby, Murray & Andrews, *op.cit.*, pp.232-259.

6) *Ibid.*, p.230. 미국에서는 어느 기업의 시설 및 운영이 환경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독립된 전문가에 의하여 또는 자체적으로 체계적이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받게 하는 ‘환경감사’제를 운용하고 있다. 환경감사를 받는 기업은 환경법규 위반건수가 크게 줄고 종업원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이점이 있지만 일반에 非公開인 회사 내부문건이므로 공시효과는 없다.

7) 황진택, “21세기 환경정책의 새로운 지평—環境과 金融의 相生”, 『그린삼성』 제58호(2001.봄), 8면.

8) 홍중호,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사고와 자본시장의 반응”, 『그린삼성』 제58호(2001.봄), 15~17면.

## 2. 環境에 관한 財務情報

상장기업의 환경규제 준수 여부가 증권시장에서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되므로 당해 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市場을 통하여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이러한 환경정보는 어디에 어떠한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효과적인지 알아보자.

우선 기업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는 기업의 연간 사업활동을 기술하는데 환경관련 사항도 빠짐없이 기재하게 되어 있다. 기업의 사업보고서는 주주들에게 배포되고 증권감독기관에도 제출되므로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투자자들의 판단자료가 된다. 환경에 관한 재무정보란 환경법규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당연히 포함되며, 그밖에 투자자들이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환경에 관한 각종 의무사항(environmental liabilities)도 이에 해당한다.<sup>9)</sup>

일반적으로 기업이 환경정책을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공개(voluntary disclosure)하는 이상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오해를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sup>10)</sup> 그런데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重大性(materiality)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나 은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 이상이면 설령 실정법상으로는 그리 중대한 위반은 아닐지라도 기재하여야 한다.

## III. 國際的인 環境情報 公示基準

### 1. 美國에서의 環境情報 公示

#### (1) 沿革

미국에서 1969년 제정된 환경정책법(NEPA)은 전국적인 환경정책의 시행을 목적으로 정부기관들이 국가적인 환경목표에 부합되는 정책과 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다.<sup>11)</sup>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했는데, 당시 민간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는 SEC에 대하여 조속한 규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petition)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SEC가 1971년 7월에 공표한 환경정보에 관한 지침(Interpretive Release "Disclosures Pertaining to Matters Involving the Environment and Civil Rights")은 소송이나 자본적 지출 기타 기업의 收益力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관련법을 포함한

9) Bagby, Murray & Andrews, *op.cit.*, p.226.

10) *Ibid.*, p.284.

11) 1969년의 NEPA 시행에 즈음하여 닉슨 대통령은 모든 연방 정부기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1,514)을 발하였다.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만일 기업이 공시할 사항이 중요하지 않다고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SEC로부터 이를 해명하는 보완자료를 요구받게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NRDC와 같은 환경단체는 SEC가 규정 제정에 능장<sup>12)</sup>을 부린다 하여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에 제소<sup>13)</sup>하는 일도 있었으므로 1973년 4월 SEC는 서둘러 1971년 지침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14)</sup>

당시 NRDC가 연방법원에 제소한 사항은 첫째, SEC의 기업공시기준을 개정하여 일반 공중도 SEC의 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할 것, 둘째,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고 평등고용(equal employment)에 관한 통계를 공개할 것, 셋째, NEPA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절차를 개정할 것 등이었다.<sup>15)</sup> 그 후 일련의 법정 공방을 통하여 SEC는 환경법규의 준수에 관한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일반의 참여가 가능한 청문회(legislative hearings)를 열고, 倫理를 중시하는 투자자들(ethical investors)이 참고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의 공시’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sup>16)</sup> 당시 법원에서는 일련의 소송사건에서 환경관련법을 엄격히 준수하더라도 그 절차를 정하는 일은 행정기관의 裁量(agency discretion)에 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sup>17)</sup>

미국에서 환경에 관한 재무정보를 공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중대한 환경정보는 일반 공중에 알려야 시장에서 환경규제법규를 준수하도록 주식 가격의 등락을 통하여 기업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효과도 커진다는 점이다.

## (2) 美國의 環境公示規程

미국에서 상장법인이 환경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근거(environmental disclosure regulations)<sup>18)</sup>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레귤레이션 S-K」는 SEC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와 투자자

12) SEC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기업들이 환경규제 강화에 극력 반대한 탓도 있지만, 기업공시에 대한 SEC의 규제 권한이 증권법상의 경제 및 투자시장에 보호에 한정되는 만큼 NEPA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때 환경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정도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NRDC가 요구하는 지나친 공시정보는 정보의 홍수와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13)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v. SEC*, No. 72-1148 (D.C. Cir. Feb. 8, 1973). 이 사건에서 연방고등법원은 SEC이 규정의 제정을 미룬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최종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NRD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4) 이것도 기존 지침을 확장하는 것은 별로 없었고 ‘환경법규의 준수가 기업의 자본적 지출, 수익 및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중대한’ 환경관련 소송(material environmental litigation)에 한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重大性’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기술(generic description)에 그쳤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1971년 지침을 축소 규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15) 389 F. Supp. 689 (D.D.C. 1974)

16) Bagby, Murray & Andrews, *op.cit.*, pp.272-282.

17)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v. SEC*, 606 F.2d 1055-1056 (D.C. Dir. 1979): 연방법원이 1978년의 버몬트 양키 핵발전소 사건, 1976년 플린트 리지 개발회사 사건 등에서 거의 예외없이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였음을 보여준다.

18) Regulations S-K, S-X, S-B는 각각 17 C.F.R. §229와 §210, §228에 규정되어 있다.

들에 배포하는 사업설명서(prospectus)에 기재해야 하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비재무적 정보(non-financial, qualitative disclosures)의 작성 및 양식에 관한 규정이다.

둘째, 「레귤레이션 S-X」는 SEC와 주주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재무적 정보(quantitative financial information)의 작성과 양식에 관한 규정이다.

셋째, 「레귤레이션 S-B」는 주로 중소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레귤레이션 S-K」와 「레귤레이션 S-X」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는 다시 재무회계기준(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FAS)과 같은 전문적인 회계기준, SEC의 유권해석, 법원의 판결(case law)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중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키게 되면 證券詐欺<sup>19)</sup>와 같은 범주에서 민·형사 책임이 따르게 된다. 외국 발행자의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sup>20)</sup>

#### (가) 레귤레이션 S-K

##### ① Item 101 (Description of Business)

사업의 개요, 자회사 기타 사업부문에 관한 정보, 국내외 사업 및 수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사업활동 중에서 환경에 물질을 배출하는 것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자본적 지출, 수입 및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 ② Item 103 (Legal Proceedings)

일반 영업상의 문제가 아닌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소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피고 당사자와 소송이 계류된 법원 또는 기관, 문제가 된 사안, 예상결과 등을 기술한다.

##### ③ Item 303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MD&A)

투자자들에게 과거 및 장래의 경영분석을 통하여 당해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래 실적을 전망할 수 있도록 한다. 장래 실적의 상당 부분은 공해방지시설, 오염물질 제거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경영분석(MD&A)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재무제표상의 취급

레귤레이션 S-X는 일반회계원칙(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회계정보에 관한 것이다. 이를테면 당해 기업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조건, 사건, 상황에 대하여 우발적인 손실, 우발적인 부채(contingent environmental liability) 등으로 그 발생 가능성<sup>21)</sup>과 함께 표기하게 된다.

예컨대 환경책임법(CERCLA)상의 잠재적으로 책임 있는 당사자(potentially responsible party: PRP)<sup>22)</sup>에 해당할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제거(site cleanup)에 드는 비용, 환경소송에서 패소할 가

19) 대표적인 규정이 「Rule 10b-5」이며,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적으로 허위기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7 C.F.R. §240.10b-5.

20) 17 C.F.R. §249.220f 등 참조.

21) SFAS 제5호에 의하면 우발적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확실함’(probable), ‘상당한 가능성 있음’(reasonably possible), ‘요원함’(remote) 등으로 나누어 회계상으로 구분 표시하게 되어 있다.

22) 환경책임법(CERCLA)에 의하면 대출은행이 차주기업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담보로 취득한 토지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PRP로서 그 정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능성, 환경기준의 강화로 공해방지시설을 해야 할 의무 등을 여기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회계처리는 일반회계원칙을 따라야 하며, 공해물질을 생산함으로써 조만간 방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환경법규가 강화되어 공해를 발생하는 기계설비를 그 내용연수 이전에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 우발적 손실이라 해도 막연한 추측은 안되고 과거 지출한 경험, 다른 기업의 방제비용 등의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추정액을 대차대조표나 난외 각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 (다) 不實記載의 요건 및 효과

환경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증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환경정보의 공시가 앞에서 소개한 레귤레이션 S-K나 S-X, 회계기준에 의하여 의무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매매, 주총참석 대리권 권유(proxy solicitation), 공개매수(tender offer) 등과 관련하여 환경정보를 부실하게 공시하면 증권법상의 사기방지 규정<sup>23)</sup>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 결과 투자자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실기재를 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罰則의 적용을 받게 된다.

法院의 판례에 의하면 환경정보의 부실공시에 대하여도 증권법상의 부실기재에 관한 요건 및 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sup>24)</sup>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에 환경책임과 관련하여 不實記載가 있을 것
- ② 부실기재가 重大한(material) 사항에 속할 것
- ③ 부실기재에 관한 故意(scienter)가 있을 것
- ④ 피해자가 不實記載에 의존(justifiable reliance)하여 損害를 입었을 것
- ⑤ 有價證券의 賣買와 관련이 있을 것

#### (라) 豫測情報가 포함된 경우

기업의 수익력 예측과 관련하여 장래계획이 환경공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SEC에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예측정보가 기업 내부자에 의하여 SEC 제출용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그릇된 신뢰를 줄 수 있고, 株價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장밋빛 예측자료를 내놓기 십상이다. 환경과 관련된 예측정보의 내용에는 수입·지출 등 재무적인 사항, 투자 및 기업인수 계획, 새로운 시장전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 이슈, 환경법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기도 한다.

법원에서는 예측정보일 망정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사기로 제소 당할 수 있다고 본다.<sup>25)</sup> 그러므로 예측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지 않은 한 화를 자초할 필요는

23) 17 U.S.C. §77k(section 11 registration statement fraud), §77l(section 12(2) initial public offering sales literature fraud), §78r(section 18(a) disclosure fraud in SEC filings), §78n(section 14(a) proxy fraud), §78j(section 10(b) of the 1934 Act) and 17 C.F.R. §240.10b-5(SEC Rule 10b-5).

24)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14조에서도 SEC Rule 10b-5와 비슷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25) *Virginia Bankshares, Inc. v. Sandberg*, 501 U.S. 1083 (1991).

없을 것이다. 다만, 연방환경청에서는 상당한 근거를 갖춘 전망을 요구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레귤레이션 S-K의 경영분석(Item 303 MD&A) 항목에서는 예측·전망의 전제가 된 정치적·경제적 가정 및 예측기법을 설명하고 환경비용의 추정치도 상세히 기재하게 되어 있다. 반면, 법원에서는 SEC의 규정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증권사기방지 조항(SEC Rule 10b-5)만 가지고는 기업에 대하여 상세한 전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sup>26)</sup>

이에 SEC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실하게(in good faith) 행하여진 경우에는 欺罔의인 記述(fraudulent statements)이 아니라는 세이프하버 룰(Safeharbor Rule)을 마련하였다. 다만, 세이프하버 룰은 SEC에 제출하는 일부 보고서 및 주주에 대한 연간 사업보고서에 한하여 인정되고, 투자회사는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수입 및 손익, 자본적 지출, 배당금, 자본구조 기타 재무사항, 경영계획 및 목표, 경영분석의 경제실적 등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다. 나중에 밝혀진 데이터를 가지고 종전의 공시내용을 그때그때 수정하고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세이프하버 룰의 요건인 誠實性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forward-looking) 환경공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예측이나 전망, 기대를 기술할 때 “豫測値와 실제 結果値가 다를 수 있다”는 注意文句(bespeaks caution)를 명시하면 그것이 틀린 경우에도 사기성이 있었다고 책임을 추궁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장래 전망을 할 때 “투기적이다”, “위험하다”는 상투적으로 뻔한 주의문구(boilerplate generalization)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재무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소는 무엇인지, 당해 전망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원천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 (마) 사베인스-옥슬리법

엔론사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도 환경공시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sup>27)</sup> 2002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본래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제302조(a)항 및 SEC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업들은 「공시규제 및 절차」(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를 확립하고 대표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공시규제 및 절차에 따라 공시하였음을 인증(certification)하여야 한다. 비록 사베인스-옥슬리법이 환경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해도 SEC나 환경단체에서는 해당 기업이 진정으로 환경공시 내지 환경친화적 경영을 하였는지 주시할 터이기 때문이다.

SEC 규칙(2002. 8. 29자로 시행)에 의하여 CEO와 CFO가 연차보고서(Form 10-K)와 분기보고서(Form 10-Q)에서 인증하여야 하는 사항<sup>28)</sup>은 다음과 같다.

- 사베인스-옥슬리법 상의 공시규제 및 절차를 확립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당해 기간 동안 회사

26) Bagby, Murray & Andrews, *op.cit.*, pp.329-331.

27) Sidley Austin Brown & Wood LLP, "The Impact of Sarbanes-Oxley on SEC Disclosure of Environmental Matters", October 11, 2002.

28) CEO 및 CFO의 인증서는 SEC 규칙에 정한 양식(the "exact form")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 에 관한 중요한 정보(material information)를 알고 있고 보고서 제출 전 90일 이내에 공시규제가 효과적이었음을 평가하였으며, 보고서에 공시규제 및 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언급하였음
- 회사의 감사인 및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데이터를 기록·처리·요약·보고하는 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용상의 중대한 차이점 및 약점을 보고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에 역할을 맡고 있는 임·직원과 관련된 사기사건을 (경미한 것이라도) 보고하였음
  - 연차/분기보고서에서 내부통제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는지 표시하였음

다시 말해서 환경공시와 관련된 사항<sup>29)</sup>이 CEO, CFO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누적적으로 기록·처리·요약·보고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공시규제 및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SEC에서는 상장기업들에 대해 이러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 법무담당관, 위험관리담당자, 투자관계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30)</sup>

## 2. 유럽에서의 環境情報 公示

### (1) EU의 環境公示에 관한 法規

유럽에서는 1990년까지만 해도 환경공시에 관한 요구가 없었고, 더군다나 미국의 CERCLA 같은 법도 없었다. 그러다가 대형 환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비로소 환경감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990년대 초에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EU 법규에는 「환경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관한 지침」(Directive N 90/313 on the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환경감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an Eco-Audit Scheme), 「폐기물에 관한 엄격책임 지침」(Directive on strict liability resulting from waste) 등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EU에서는 환경에 대한 일반의 의식(public awareness)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환경 문제에 대한 意識이 없고서는 환경을 추가비용 정도로 여기는 기업이나 환경을 부차적인 문제 또는 일종의 사치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환경 문제에 진지한 관심과 태도를 보이기 어렵어 것이다.<sup>31)</sup> 이에 따라 EU에서는, 기업공시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환경정보에 많이 접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식으로 접근하여 기업들이 環境經營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29) 환경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Regulation S-K, Item 101(영업의 표시)에 의하여 환경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 Item 103(법적 쟁송절차)에 의한 환경과 관련된 행정·사법절차, Item 103(경영분석)에 따른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환경관련 경향, 사태 또는 불확실성, 그리고 재무회계기준(FASB 5)에 의한 환경정화비용 등의 우발손실금(loss contingencies) 내역 등이다.

30) The preamble of the SEC Rule of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August 29, 2002.

31) Caroline London and Brizay London, "Disclosure Obligations and Due Diligence Practices in Europe", American Law Institute - ABA Continuing Legal Education, Fifth Annual ALI-ABA Advanced Course of Study, Sept. 24, 1992, p.669.

예컨대 1990년 6월에 채택된 指針(Directive LJ L158)에서는 일반인의 환경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정보의 투명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U의 회원국들은 상기 지침에 따라 1992년 말까지 지침의 규정을 국내입법화해야 하고, 정부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공개하여야 했다. 정보에 관한 정의가 다소 광범위하기는 했지만 환경에 관한 서면·시청각·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망라하였고, 여기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처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당해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환경정보의 열람이 부당하게 거절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다만, EU 지침에서는 두 가지의 예외를 허용하였다. 하나는 회원국 정부의 국가이익에 관계된 국가안보, 공공안전, 재판 계류 중인 소송, 경제적 비밀사항, 개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신청인의 명백히 불합리하고 과도한 정보의 요구도 거절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01년 7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간행한 綠書(Green Paper)에서 ‘전세계적인 환경문제’(Global Environmental Concerns)라는 제하에 기업이 세계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32)</sup> 이러한 견지에서 EU가 1990년대 들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기업에 대한 환경감사와 환경 마크제(이른바 “에코-라벨”)이다.

## (2) 企業에 대한 環境監査制

EU에서는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통제하고 방지·저감하여야 할 책임을 기업들에 부과하고 있다.<sup>33)</sup> 따라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EU의 기업들은 환경보전의 이행 및 환경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환경감사기법(Eco-Audit scheme)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본래 환경감사기법이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89년에 제안한 것으로 EU가 1993년 6월 각료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EEC) No. 1836/93 of 29 June 1993)으로 채택하여 ‘공동체 환경경영 및 감사기법’(Community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으로 발전시켜 온 것이다. EU는 2001년 3월 환경감사제를 정식 EU 規程<sup>34)</sup>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EU 규정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1993년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동 규정은 역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로 되어 있음에도 회원국내에서 法律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환경감사(environmental auditing)란 “환경조직, 경영, 설비가 환경보전을 목표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이고 문서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

32) Paras.59-60. GREEN PAPER 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8.7.2001 COM(2001) 366. <[http://europa.eu.int/eur-lex/en/lif/reg/en\\_register\\_151010.html](http://europa.eu.int/eur-lex/en/lif/reg/en_register_151010.html)>

33) 국제적으로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UN은 최근 기업을 세계적인 환경개선사업의 동반자로 하는 Global Compact Initiative 사업에 착수하였고, OECD는 다국적 기업의 환경지침을 발표하였으며 EU 집행위에서도 리우 선언 10주년을 맞아 기업들이 전세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상세한 프로그램(COM 2001/53)을 내놓았다.

34) REGULATION (EC) No. 761/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01 allowing voluntary participation by organisations in a Community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http://europa.eu.int/eur-lex/en/lif/reg/en\\_register\\_151010.html](http://europa.eu.int/eur-lex/en/lif/reg/en_register_151010.html)>

로 구성된 경영관리기법”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감사는 회사의 경영에 편입이 되며 그 결과는 전략수립에 이용된다. EU에서는 환경 감사를 法으로 강제하지 않고 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sup>35)</sup> 그리 함으로써 기업들의 환경보전활동을 권장하고 촉진하자는 취지이며, 이러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실적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기업이 실적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받으면 되지만, 일반인들은 기업의 활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서 당해 기업이 환경친화적 경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환경감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sup>36)</sup> 환경감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국의 환경감독기관에 통보하고 公認환경감사관에게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statement)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공장 소재지, 당면 환경문제, 공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질에 관한 통계, 당해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보전활동의 평가, 다음 보고서의 발표일 등을 기술한다. 공인환경감사관은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CPA)처럼 당해 기업의 환경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하여 이 기업이 ‘환경보전 활동을 잘 하고 있다’(validation of statement), 혹은 ‘잘못하고 있다’(refusal of the validation)는 식으로 일반공중에 알리게 된다.

환경감사관은 어디까지나 독립된 환경전문가로서 의뢰기업과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는데, EU 집행위에서 마련한 감사행위준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감사의 절차나 그 기술지침은 ICC, UNEP 등에서 기준을 공표한 바 있다. 환경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각 회원국에 소정 자격을 갖춘 환경감사관들이 많아서 언제든지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환경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환경감사’ 마크(Eco-Audit logo)를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상품이나 포장, 상품광고에는 쓸 수 없지만, 회사의 브로슈어, 보고서, 편지지 등에 환경감사 마크를 붙일 수 있으므로 환경 문제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환경 마크제(Eco-Label)는 한 걸음 더 나아가 個別 상품 또는 서비스가 환경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되고, 또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商品에 대한 環境 마크制

현재 EU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環境公示 사업은 환경보전형 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하는 환경 마크제이다. EU는 일찍이 1992년부터 에코-라벨에 관한 규칙<sup>38)</sup>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환경보전에 노력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유통과정을 거쳐 상품을 만들어 팔도록 세탁기, 화장

35)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집행위에서는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M&A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는 데 15년씩이나 걸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유럽 의회 및 각료이사회에서 강제성 있는 규정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London & London, *op.cit.*, p.677.

36) *Ibid.*, pp.672-676.

38) Council Regulation No.880/92 of 23 March 1992. 동 규정은 뒤에 Regulation (EC) No. 198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on a revised Community eco-label award scheme으로 개정되었다. Commission Decision of 21 December 2001 establishing the Community eco-label working plan (2002/18/EC).

지, 세제, 전구, 도료, 침대시트, T셔츠 등 가급적 많은 상품에 환경 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을 1990년대 중반부터 실시하여 왔다.<sup>39)</sup>

EU의 환경 마크는 환경보전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에 따라 상품의 설계-생산-유통에서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에의 부하를 평가(life cycle assessment)하여 품목별로 부여된다. 대상품목의 선정 및 판정기준(criteria)의 제정에 있어서 산업계, 유통업계,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단체(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포함)들로 구성된 협의체(Forum)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종합적인 제품정책(IPP)이란 환경을 고려하는 가격책정과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 환경친화적인 상품 디자인과 사용법을 내용으로 하며, 소비자들이 환경문제에 관하여 알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sup>40)</sup> 예컨대 에코-라벨의 판정기준을 보면 ▷재생가능한 자원의 소비량,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유황 배출량, ▷유기물(COD)의 하수배출, ▷염소화합물(AOX)의 배출, ▷폐기물의 배출 등의 환경부하를 항목별로 심사하게 된다.

환경 마크제의 운영은 에코-라벨 부여기준의 설정, 업체의 신청 심사 및 라벨 부여, 필요시 판정기준의 수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라벨 부여기준의 설정 및 수정은 집행위가 관장하고 개별 제품에 대한 라벨 부여는 각 회원국의 당국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자사 제품에 환경 마크를 부착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의 제품이 제조되거나 시판되는 회원국 관할 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EU 내에서도 각 회원국의 환경에 관한 사정이 다르므로 대상제품의 선정, 판정기준의 책정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종종 빚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가 독자적인 에코 라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EU 및 회원국간에 이중적으로 시행되는 예도 적지 않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EU 회원국들이 공공조달 시에 ‘에코-라벨’을 부착한 제품에 우선권을 주고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경우에는 에코-라벨의 이용이 획기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EU의 수입자가 회원국들에 수출하는 상품에 환경 마크를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41)</sup> WTO에서도 「무역·환경위원회」를 두고 EU의 에코-라벨을 둘러싼 통상분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제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출품에 대한 환경 마크 또는 ISO 환경인증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환경경영

39) 山口光恒, “EUエコラベル制度の動向(上) - わが國は何を學ぶべきか”, NBL No.594 (1996. 6. 1), 31면.

40) 환경 마크는 국제표준협회의 ISO 14000과 함께 부여될 수 있다. ISO 타입-I 라벨은 제3자 기관의 인증에 의하여 부착하게 되며,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ISO 14024 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부여된다. 이에 대하여 타입 II 라벨(자기선언 라벨)은 기업 스스로 선언하는 일종의 환경광고에 해당하고, 타입 III 라벨(정보제공 라벨)은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관련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1) EU의 ‘에코-라벨’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제조업체 종사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컨대 섬유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화학약품은 7천여 종이 넘는데 그 중 상당수가 발암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에코-라벨 부착은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선진국 섬유업체들의 요구로 진행되고 있다. 무역일보, 1999.11.11.

에도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호주에서의 環境情報 公示

#### (1) 금융서비스개혁법의 시행

오스트레일리아는 2002년 3월 중전의 회사법에 금융관련 규정을 통합한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sup>42)</sup>을 제정, 시행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투자공시(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Disclosure: 통상 “SRI 공시”라 함) 의무를 새로 규정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도모한 것이 특색이다. 이 법의 시행일인 2002년 3월 11일 이후에 선보이는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전에 나온 금융상품은 즉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금융상품의 공시

금융서비스개혁법에 의하면, 상기 금융상품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되 하나의 사업인가(single license)를 받음으로써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행동기준(minimum standards of conduct)을 제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일정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금융서비스개혁법에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금융소비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판매 시점에서의 상품명세에 관한 공시(상기 SRI 공시와 관련이 있음)
- 지속적인 공시의무
- 정기적인 보고의무

판매시점에서 SRI 공시를 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취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일정 범위의 유사 상품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상품 제공자는 금융소비자(투자자)에 대하여 판매·발행(또는 판매·발행의 청약을 포함)하는 시점에서 금융상품공시정보(Product Disclosure Statement: PDS)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상품공시정보(PDS)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금융상품 제공자의 상호 및 주소, 연락처
- 고객이 누리는 이점과 혜택
- 당해 상품에 걸부된 위험
- 고객이 지급할 대금 및 수수료

---

42) 금융서비스개혁법은 정부가 일찍이 「회사법 경제개혁 프로그램 6」(Corporate Law Economic Reform Program 6)에서 제안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일반생명보험, 노후연금, 예금, 非現金支給계정을 망라한다.

- 분쟁해결방법
- 세법관련 사항
- 거래의 취소·철회에 관한 사항
- 기타 특기할 만한 사항
- 금융상품 제공자가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기타 정보

### (3) 구체적인 PDS의 내용

구체적으로 금융상품공시정보(PDS)에는 어떠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만일 어느 금융상품이 투자요소(investment component)를 포함<sup>43)</sup>하고 있다면 동 상품의 선택, 보유, 투자의 실행을 위한 금융상품공시정보에는 근로기준 또는 환경·사회·윤리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재무부에서는 SRI 공시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기업금융감독기관(ASIC)에서도 금융상품 제공자들이 SRI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다.

### (4) 금융서비스개혁법 시행에 따른 효과

요컨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투자요소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제공자가 SRI법 및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환경정보의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환경이나 사회·윤리적으로 신뢰가 가는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SRI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및 투자자들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금융상품 제공자들은 환경이나 사회·윤리적으로 신뢰가 가는 투자상품을 더 많이 내놓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누적됨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기업들은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기업 활동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SRI 상품의 판매로 수익을 증대하려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IV. 國內企業의 對應方案

### 1. 개 관

美國에서는 ‘市場을 통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 기업들의 환경규제 준수를 유도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고, 증권감독당국(SEC)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3) 현재 이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노후연금, 관리대상 투자상품, 적립식 생명보험 등이다.

반면 유럽에서 시도되고 있는 환경감사제나 환경 마크제(‘에코-라벨’)는 소비자들에게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산품 품질표시제(KS 마크, 굿 디자인 마크 등)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점에 비추어 환경 마크를 한 제품들도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환경 마크를 부여받기 위해 환경보전에 노력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 마크제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우선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환경정보 공시제도가 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모든 국가기관이 종합적인 환경정책에 입각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선포할 때 반드시 환경친화적 경영을 선언하도록 한다.

둘째, 증권시장에 공시제도가 확립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不實公示에 대하여는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응분의 제재가 따라야 한다.

셋째, 비상장기업들도 환경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다시 말해서 상장법인만이 차별적으로 엄격한 환경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일반의 환경문제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정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證券市場을 통한 環境公示 확대

우리나라 環境政策基本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하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미국식 표현을 빌리면 증권감독기관도 국가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證券去來法 제14조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에 따른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묻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이에 따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환경관련법규가 대폭 강화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벌칙과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환경단체(NGO)의 활약으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sup>44)</sup> 법률시장이 조기에 개방될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성행하였듯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환경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상장법인 공시규정에는 아직 환경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주무관청에서 보다

---

44) 최근 몇 년간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동강댐 건설, 시화호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환경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정부 개발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을 가져왔다.

강화된 환경관련 법규를 시행하거나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환경소송이 제기된 결과 당해 기업의 경영이나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코스닥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69조)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책임이 더욱 무거워지는 추세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일수록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 책임은 기업들에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주나 투자자들이 유의할 사항으로서 기업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식 環境公示규정을 모델로 하여 정부가 출산하여 관련규정을 손질하거나 환경단체가 청원하는 식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최근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 투자상품을 내놓는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고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지 공시하도록 하여 이를 투자자들이 선호하여 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 3. 市民참여를 통한 環境公示 유도

우리나라가 유럽식의 환경감사 및 환경 마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환경 마크제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대다수의 기업이 이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반쪽짜리 정보제공에 그치기 쉽다. 그러므로 많은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활동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기업 이미지 개선 차원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매출확대, 수익증대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현행 실정법상 보장된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環境・交通・災害등에 關한影響評價法」(이하 “법”이라 함)(1999.12.31 법률 제6095호)에 의하면 관련법령에 규정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법 2조 가목)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허가・면허 등을 신청할 때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법 5조), 影響評價代行者가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법 7, 8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특히 生態係의 保全價値가 큰 지역에서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아닌 환경단체(NGO) 등의 의견도 듣도록(법 6조) 함으로써 民主的이고 公正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알리고 그 저감대책을 보고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sup>45)</sup>

45) 감사원이 2001년 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정책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인 정부기관(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은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도 않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례가 많았다. 한국경제신문, “19개 정부사업 환경평가 무시”, 2002.8.24.

#### 4. 金融機關・大企業을 통한 環境公示 촉진

증권시장에 기업의 환경정보가 상세하게 공시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기업의 환경개선 이니셔티브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환경정보도 포함시키도록 하여 심사를 받게 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국의 CERCLA와 같은 포괄적인 환경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금융기관의 책임을 시사하는 대법원 판결<sup>46)</sup>이 나온 터라 금융기관들로서는 거래기업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크게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환경정보를 제출하게 한다면 기업의 환경보전 노력 및 환경개선을 위한 경영활동은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에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주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환경친화적 경영을 선언하는 한편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포스코는 2003년 6월초 포스코 윤리규범 선포식을 가졌는데, 모두 7개 부문으로 구성된 행동준칙의 하나로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 사실이 있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한 바 있다.<sup>47)</sup> 이와 같이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과 거래할 때 탈세·회계부정은 물론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 사실이 있는 기업하고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나간다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46) 화선키메탈(주)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1995.10.27. 선고 94구5572 판결 및 대법원 1997.8.22. 선고 95누17724 판결 등.

47) 한국경제신문 2003.6.3(A15).

## 참고 문헌

- 홍중호,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사고와 자본시장의 반응”, 『그린삼성』 제58호(2001 봄).
- 황진택, “21세기 환경정책의 새로운 지평—環境과 金融의 相生”, 『그린삼성』 제58호(2001 봄).
- 吉村良一・水野武夫 編, 『環境法入門 - 公害から地球環境問題まで(第2版)』, 法律文化社, 2002.
- 山口光恒, “EUエコラベル制度の動向(上) - わが國は何を學ぶべきか”, NBL No.594 (1996. 6. 1).
- Edward L. Symons, Jr. and James J. White, *Banking Law*, West Publishing Co., 1991.
- John W. Bagby, Paula C. Murray and Eric T. Andrews, “How Green was My Balance Sheet?: Corporate Liability and Environmental Disclosure”, 14 VaELJ 228.
- Elizabeth Glass Geltman and Andrew E. Skroback, “Environmental Activism and the Ethical Investor”, Symposium: Environmental Law and Busines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rporation Law*, Spring 1997.
- Caroline London and Brizay London, “Disclosure Obligations and Due Diligence Practices in Europe”, American Law Institute - ABA Continuing Legal Education, Fifth Annual ALI-ABA Advanced Course of Study, Sept. 24, 1992.
- Gary Rischitelli, “Developing a Global Right to Know”, *ILS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Fall 1995
- 유엔환경계획 홈페이지 <http://www.unep.org>
-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의 환경관련 부문  
[http://europa.eu.int/eur-lex/en/lif/reg/en\\_register\\_1510.html](http://europa.eu.int/eur-lex/en/lif/reg/en_register_1510.html) [03.10.25]

**주 제 어** : 지속가능 발전, 환경규제, 공시, 환경감사, 환경마크(에코-라벨), 사회적 책임투자, 윤리 경영

**Key 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regulation, disclosure, environmental auditing, Eco-label,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ethical management

## **Korean Perspectives on the Enhanc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Environmental Disclosure**

Park, Whon-II

After decades of unparalleled economic growth, Korea is increasingly troubled with air, water and soil pollutions. For the nation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enterprises and individual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ir environment than ever before.

The most effective way that goads businesses to preserve environment is somewhat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Take an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1960s and 1970s, the U.S. government stepped up environmental regulation only to fail. It was because reinforced control meant swelling cost to businesses while loose control ushered in violation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contrary, the European countries were trying to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and encouraged companies to do environment-friendly operations.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ave ensured the public the right to know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reby to take to the environment-friendly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y viol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had only to lead to the judiciary remedy of appropriate damages. In 1969,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promoted the nationwide measur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But an increasing number of businesses were inclined to violate the mandatory pollution standards rather than to comply with the rules at a great cost. Accordingly the U.S. government has manipulated the financial markets to take market-based economic incentive approach. For example, banks were obliged to demand the borrowers to observe the relevant environment regulations. In the capital markets, the companies which make effor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could be awarded economic incentives in the aftermath of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on Chevron in 1984.

Though the American approach is efficien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Korean companies are not accustomed to the environmental disclosure.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wa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includes environmental auditing and eco-label system among others,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enhance the consumer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but very slow owing to voluntary participation of business communities.

In conclusion, environmental disclosure will have constructive results when all the governmental agencies including financial supervisory bodies stick to the concerted

environmental policy, while big enterprises declare the ethical management principles with considerable emphasis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ainst these backdrops, all the business circles are more and more willing to abide by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n ever before.